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7일, 신성범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9. 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신성범의원)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인 등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의 사업소분·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 면제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여건 악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농어업 및 관련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2024년 이후 일몰 예정인 주민세 면제에 대한 지방세 특례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관련 사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이어가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의 일몰기한 연장 (개정안 제10조제2항)

개정안 제10조제2항은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는 현행법 제10조제2항의 일몰기한을 2027년

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여건 악화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 등을 감안할 때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개정안 제10조제2항을 통한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 신성범(Ⅰ)의원안은 일몰기한을 3년, 김종양의원안은 일몰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일몰기한의 설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김종양의원안에 따라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 수는 2025~2029년간 총 323.5억원(연평균 6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 여건 악화 등으로 농어업인의 영농사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나, 올해(2024년) 일몰이 도래되는 사항으로 현재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정부안을 검토 중으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 참고로, 주민세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소규모 영세 농어업인은 면세 사업장임.

「지방세법」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